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2월 25일, 이창열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창군 관내 주둔 군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군과 지역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여 군장병을 평창군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6. 02. 25.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2. 제안이유

- 평창군 관내 주둔 군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군과 지역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여 군장병을 평창군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민·관·군 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장병을 발굴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군부대와 지역사회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 ⑦ (생략)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 11. 17.>]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538
----------	-----

발의연월일: 2026년 2월 25일

발 의 자 :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의원

1. 제안이유

- 평창군 관내 주둔 군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군과 지역 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여 군장병을 평창군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 불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6. 2. 10. ~ 2026. 2. 23.(14일간), 아래 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검토안(안전교통과)	의회의견
<p>제명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평창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명변경 「평창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p> <p>사유 재정지출·보조금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므로 법률의 근거와 범위가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듯이 단순 군 주둔 ‘군부대 장병의 사기진작과 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군부대 장병을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생활인구나 정착인구로 유입하는 등 좀더 구체화된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p> <p>아울러, 평창군의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확립을 위한 업무목적에 갖는 안전교통과에서 군부대 지원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계획수립에 한계가 있음. 현재 군부대 장병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일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지역 예비군과 민방위 등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한 조례로, 군의 재정지출 근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p> <p>- 평창군장병 지원 조례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 3.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u>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u> 따라서, 강원도 타 시군의 군민화, 시민화를 위한 조례(안)과 같이 그 목적을 분명히 하여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p>	<p>[검토안 반영안함]</p> <p>사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목적 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입법 취지나 목적이 종합적·포괄적으로 나타나도록 서술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p> <p>구체화된 목적을 가지고 목적 내용을 수정하거나 더 나아가서 본 조례안 취지와 달리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취지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p>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평창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의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 탐방 지원사업
2. 체육 및 문화·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
3. 군장병의 교통편의 지원사업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대상자로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장병을 발굴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 ⑦ (생략)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관련 조문 : 제4조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
2. 체육 및 문화·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
3. 군장병의 교통편의 지원사업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군부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연락처	(033) 330 - 2081